

原子力法 改正主要內容

片 京 範

科學技術處 原子力局

原子力政策課 電氣技佐

1958년 3월 制定公布된 原子力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原子力發展에 따라 그 內容이 크게 보강되어 1986년 5월 제 11차개정에 이르게 되었다. 제 11차개정의 主要內容은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同位元素利用의 증가에 따른 급증된 放射性廢棄物의 國家綜合管理體制를 구축하는 것이다. 아울러서 原子力委員會의 政策遂行能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地位를 격상시키고, 原子力技術向上과 經驗蓄積에 따라 國內原子力의 利用開發과 安全規制가 相互補完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安全規制를 완화시킨 것이다. 그후 3년여 지연되어 오던 시행령이 우여곡절속에 1989년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施行規則도 곧 改正公布되게 될 것이다. 改正된 主要內容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.

1. 原子力法

- 原子力委員會의 委員長을 科學技術處 長官에서 副總理로, 委員은 次官級에서 長官級으로 格上하며, 委員數를 7人以上 9人以下에서 5人以上 7人以下로 조정함. (第 5條)
- 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그 建設工事의 着手전에 設計 및 工事方法을 申告하도록 하였던 것을 建設工事を 완료하기 전에 設計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도록함. (第 14條)
- 核武器非擴散條約 등 國際約束에 따른 保障措置의 이행을 위하여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에 관한 規定을 新設함. (第 15條의 2)
- 發電用原子爐의 設置운영에 따르는 檢査의 일부를 事業者의 自體檢査로 같음할 수 있도록함. (第 16條)
- 原子力關係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認可를 받도록함. (第 20條)

- 放射線發生裝置를 사용하려면 許可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 規模이하의 경우에는 申告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함. (제 65條)
- 모든 放射性同位元素使用者등은 放射線取扱監督者免許등을 받은 者를 放射線安全管理者로 선임하여야 하던 것을 許可事業者의 경우에는 現행대로 두되 申告事業者의 경우에는 非免許者라도 일정한 敎育을 받으면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. (第 72條)
- 韓國에너지研究所이외의 者에 대하여 放射性廢棄物의 永久處分을 제한함. (第 84條)
- 政府가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을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을 設置하는 規定을 新設함(第 84條의 2)
- 發電用原子爐設置者·發電用原子爐運營者·研究用原子爐等 設置者·生産業者·核燃料週期事業者·核燃料物質使用者·核原料物質使用者·放射性同位元素使用者등 및 廢棄業者로서 放射性廢棄物을 발생하게 하는 者가 放射性廢棄物의 管理費用을 부담하도록함. (第 85條)
- 行政處분에 따른 '紛爭'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聽聞制度를 導入함. (第 104條의 2)

2. 施行令

- 原子力委員會의 上程案件을 事前에 審議하기 위하여 同委員會 밑에 必要한 專門委員會을 두도록함. (第 13條)
-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規定이 新設됨에 따라 이의 運營方法및 그 節次를 정함. (第 26條의 2, 第 43條, 第 136條, 第 144條, 第 154條, 第 180條의 2)
-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政府檢査중 使用前檢査

- 및 定期檢査의 一部를 事業者의 自體檢査로 같 음하고자 하는 경우 그 檢査의 對象 및 範圍등 에 대하여는 科學技術處長官이 精하도록 함.(第 27條의 2, 第 42條의 2)
- 低準位인 環境放射能의 데이터 信賴性 提高를 위하여 政府次元의 環境調查 二重監視體制를 構築토록함.(第 111條)
 - 核燃料製品의 設計 및 加工方法에 대한 確證檢査規定을 明文化함.(第 142條)
 - 廢棄業者의 廢棄施設등에 대하여 工事 및 성능에 관한 檢査規定을 新設함.(第 221條의 4)
 - 使用後核燃料의 中間貯藏施設에 관한 위치·구조 및 設備技術基準을 정함.(第 229條의 2)
 -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運用審議會를 設置하고 그 運營規定을 정함.(第 234條의 3내지 第 234條의 8)
 - 基金에 여유자금인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移越하여 使用하도록함.(第 234條의 13)
 - 放射性廢棄物發生者의 負擔金料率은 發電用原子爐事業者의 경우 原子爐運轉으로 生産된 電力量에 대하여 킬로와트시간(KWH)당 2.0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科學技術處長官이 動力資源部長官과 협의후 原子力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함.(第 234條의 19)
 - 放射性物質의 包藏技術基準중 우송시의 包藏基準을 일반적인 運搬時의 包藏基準과 분리하여 정함.(第 240條의 2)
 - 行政聽聞制度의 施行節次 및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를 정함.(第 336條, 第 337條)

3. 施行規則

- 發電用原子爐施設者가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이를 당해 公事완료/ 60일前까지 제출하도록 함.(第 8條)
- 國際規制物資에 대한 計量管理規定중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.(第 10條의 2)
- 原子爐등의 製作에 있어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는 事項을 정함.(第 40條의 2)
- 가공사업자가 核燃料의 檢査를 받아야 할 시기를 정하고, 檢査신청서를 檢査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前까지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함.(第 58條의 2)
-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, 이 경우의 變更申告書의 서식과 그 제출기간을 정함.(第 80條, 第 81條)
- 原子力關係事業者는 國際規制物資가 저장·사용·生産되는 原子力關係施設에 관한 설계정보서를 國際規制物資가 반입되기 8월前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함.(第 117條의 2)
- 法에서 위임한 國際規制物資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.(第 131條)

~~~~~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.~~~~~

#### 평생회원

| 번호 | 성명  | 소속                     | 가입일자   | 비고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노경석 | 마산 간호전문대학 방사선학과        | 8. 17  | 보통에서전환 |
| 2  | 서두환 |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로관리실장(서울)   | 10. 16 |        |
| 3  | 김재록 | 한국에너지연구소 동위원소실 1실장(서울) | 10. 16 |        |

#### 보통회원

| 번호 | 성명  | 소속                   | 가입일자 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1  | 김대환 | (주)삼영검사 엔지니어링        | 7. 13 |    |
| 2  | 문기섭 |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수검부 R/T 실 | 7. 14 |    |
| 3  | 윤우정 |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        | 9. 21 |    |
| 4  | 박래후 | 조선대병원 코발트 치료실        | 9. 19 |    |